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 안 번 호	제2854호

제출년월일 2021. 10. 08.
제 출 자 김 포 시 장

1. 심사경과

❍ 본 안건은 2021년 10월 0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❍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,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❍ “저소득 청년”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제1호의2 신설)

❍ 저소득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저소득 청년이 급여 감소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5조의2제4항 신설)

❍ 청년기본소득 최초 지급(2019년)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중 청년기본소득 미신청자에 대한 소급 지급 근거 마련(부칙 제2조제2항)

4. 검토의견

❍ 본 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우 공적이전소득에 합산되어 급여 삭감 우려에 따른 신청 포기 사례가 발생하여 일시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급여 감소 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이며 이와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(원안가결 21.09.15.)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